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DUR관리실장)

(경유)

제목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
관련 협조 요청

1.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2. 행정안전부는 '23.8.14.일자로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 피해가 확산된 아래 29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.
3. 이에,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·조제(본인 부담금은 부담)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 -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

대상재난	시?군 단위(8곳)	읍?면 단위(21곳)
제6호 태풍 카눈 (1개 군, 1개 면)	• 대구 군위군	• 강원 고성군 현내면
6.27.~7.27. 호우 (7개 시?군, 20개 읍?면)	• 충북 충주시?제천시?단양군 • 충남 보령시 • 전북 김제시?완주군 • 전남 신안군	• 충북 보은군 회인면 / 증평군 증평읍?도안면 음성군 음성읍?소이면?원남면 • 충남 예산군 신암면?오가면 • 전북 군산시 서수면 / 고창군 공음면?대산면 부안군 보안면?진서면?백산면 • 전남 영암군 금정면?시종면 • 경북 안동시 길안면?예안면?녹전면상주시 동문동

○ 예외사유 :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

4. 아울러, 의약품안전사용정보(DUR)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관련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 안내 >
 지난 6~8월에 발생한 태풍 등 집중호우 관련입니다.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의 처방·조제시 DUR점검 중 발생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**예외사유 기재란에 '태풍 등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'** 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주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
5. 또한, 피해 주민께서 의약품 처방/조제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련 지자체 및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주시고,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건의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

주무관

김충열

행정사무관

손태원

보험약제과장

전결 08/16

오창현

협조자

시행 보험약제과-3322 (2023.08.16.) 접수 DUR관리부-1823 2023.08.16.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건강보험정 / neoscape1@korea.kr

책국 보험약제과 / neoscape1@korea.kr / 공개

전화 044-202-2754 전송 044-202-3935 / 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